

인천지방법원 2021. 7. 8 선고 2021가단67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이행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6. 24.

판 결 선 고 2021. 7. 8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5. 7. 20. 접수 제954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 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문주희

별지